

---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설치 추진 계획(안)

---

2025. 7.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목 차

I. 추진 근거 .....	1
II. 추진 목적 .....	1
III. 설치 개요 .....	2
① 설치 단위 .....	2
② 설치 대상 근로자의 범위 .....	2
③ 구성 및 운영 .....	2
VI. 세부 추진 계획 .....	3
① 설치 공고 .....	3
② 설치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3
③ 근로자위원 선출 및 노사협의회 구성 .....	4
④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	4
V. 행정사항 .....	5
① 노사협의회 세부 추진 일정 .....	5
② 협조사항 .....	6
<b>■ 붙임자료 .....</b>	<b>7</b>
1.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주요 사항	
3.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노동자 직종별 현황	
4. 노사협의회 임무 이행사항 소관부서 현황	
5. 노사협의회 설치 및 설치준비위원 모집 공고	
6. 설치준비위원 신청서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설치 추진 계획(안)

공단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 3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의무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법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붙임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사항

## II 추진목적

-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대화를 통한 상호협조로서 노동자 복지증진과 공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및 노동자의 직무몰입도, 직무만족도 제고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는 구분됨 :

[붙임2]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 Ⅲ

## 설치개요

### ① 설치 단위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며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에 협의회 설치
- ※ 직종별 분과위원회 설치 등은 노사협의회 구성 후 논의 가능

### ② 설치 대상 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단 소속 모든 노동자 : 약 55명(2025. 7. 7. 기준)
    - 일반직, 공무원, 기간제, 축탁직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 전체
- ※ [붙임3]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노동자 직종별 현황

### ③ 구성 및 운영

- 위원 구성
    - 노사 각 3인(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선출)
  - 운영 방법
    -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임무
    - (협의사항)
      -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노동자의 고충처리, 인사노무관리 제도개선
      - 임금체계 등의 제도개선, 그 밖에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
      -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공단의 재정 현황 등
- ※ 노사 양측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음

## VI

# 세부추진계획

### ① 설치 공고

- 협의회 의미 및 기능, 설치에 필요한 사항,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공고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공고(2025.7.7.)

### ② 설치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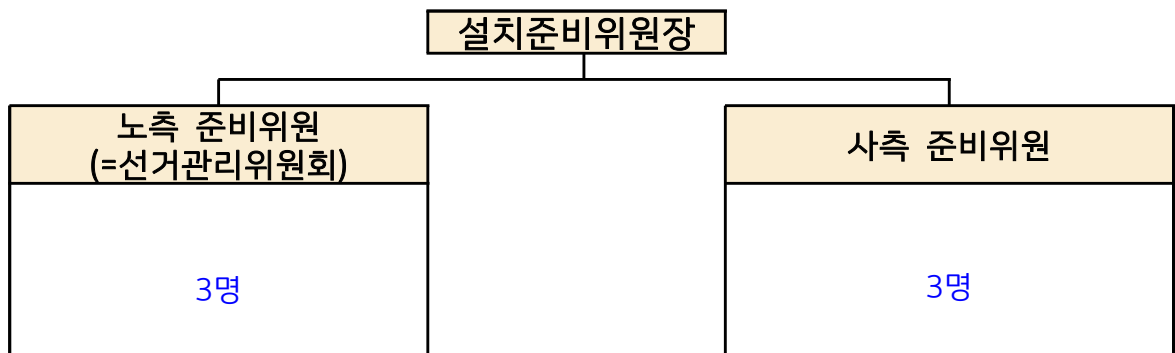
#### ○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역할) 노사협의회 위원수,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노사협의회 설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구성)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노측 준비위원은 희망자 접수 후 추첨하되 다양한 노동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직종별·성별 인원 할당)

※ 설치준비위 노동자 준비위원은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역할) 선거일시, 선거인 명부 및 추천서 양식 작성, 입후보자 접수
- (구성) 근로자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설치준비위원 중 노측 준비위원이 겸직



### ③ 근로자위원 선출 및 노사협의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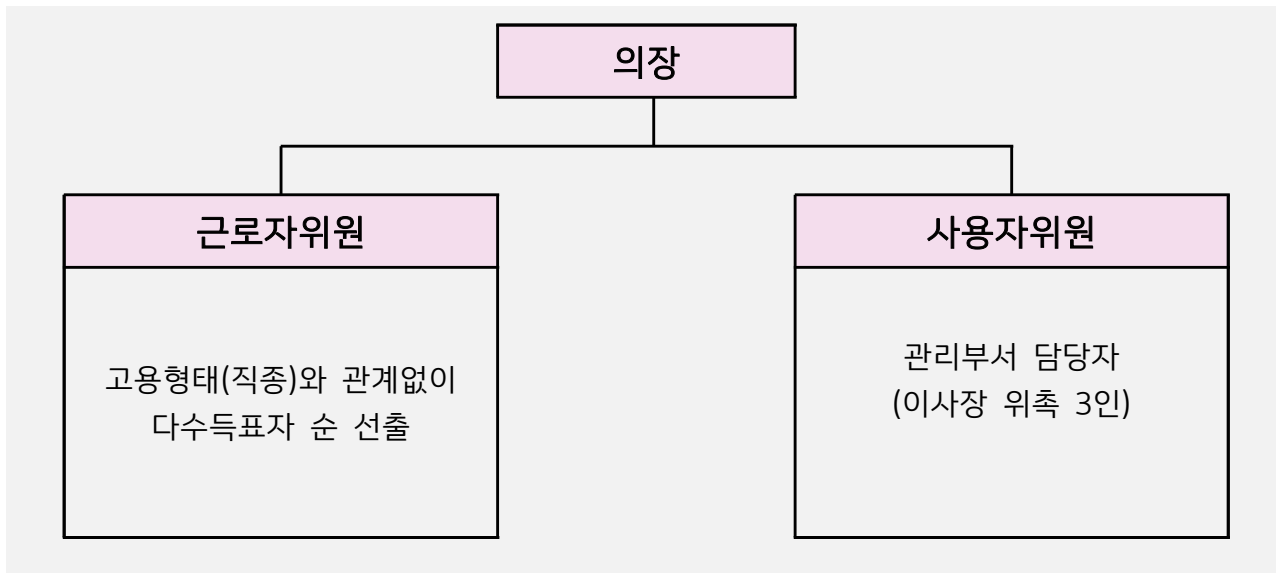
#### ○ 근로자 위원 선출 방법

-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3인 근로자위원 선출
- 투표 및 개표 → 근로자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현장투표소 설치 여부는 추후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 ○ 노사협의회 구성

- 사용자위원(3)은 이사장이 위촉, 노사 동수로 협의회 구성
  - 의장은 위원 중 호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의 공동의장 가능
  -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 법령상 협의회의 임무(의결협약보고)를 고려하여 경영지원팀 및 협의회 안건 관련부서 (인사담당 /예산담당/ 여성 등) 차장 이상으로 구성



### ④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 ○ 노사협의회 개최 및 규정 제정

- ① 노사협의회 구성 후 노사 간담회를 통한 규정(안) 마련
- ② 노사협의회 개최 후 의결을 통한 규정 제정
- ③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 ① 노사협의회 세부 추진 일정

단 계	내 용	일 정(안)
노사협의회 설치공고(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협의회 설치 목적 및 구성 등 홍보</li> <li>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공고</li> </ul>	7. 8. ~ 7. 10.
설치준비 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준비위원회 노사 각 3인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협의회 위원수, 노동자위원 선출 관련 사항 결정 등</li> </ul> </li> <li>노동자 준비위원은 희망자 추천 방식으로 선출</li> <li>사용자 준비위원은 이사장이 위촉</li> <li>설치준비위원 중 근로자위원이 선거관리위원 역할 겸임</li> </ul>	7. 11.
선거진행 및 당선자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노동자 위원선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 일정 계획 수립 및 공고</li> <li>선거인 명부 작성</li> <li>5인 이상의 추천(중복추천가능) 받은 후보 등록</li> <li>투표 안내</li> <li>투표(2일간) 시행</li> <li>근로자위원 당선자 확정·공고</li> </ul>	7.14. ~ 7.15. 7.16. ~ 7.18. 7.21. ~ 7.21. 7.22. ~ 7.22. 7.23. ~ 7.24. 7. 25.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자위원 위촉</li> <li>노사 동수로 노사협의회 구성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장은 위원 중 호선, 노사 각 1인 공동의장 가능</li> <li>위원은 비상임 무보수이며 임기 3년</li> </ul> </li> </ul>	7. 25. 7. 25.
규정 제정(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협의회 규정(안) 마련 및 검토</li> <li>노사협의회 개최하여 규정 의결</li> <li>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제출)</li> </ul>	-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 안건 처리</li> </ul>	분기별

## ㉔ 협조사항

### ○ 공단 관련부서 및 전체 근로자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노사협의회」설치에 관한 사실을 문서공람·휴게실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단 소속 근로자 전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에 협조

### ■ 붙임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주요 사항
2.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3.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근로자 직종별 현황
4. 노사협의회 임무 이행사항 소관부서 현황
5. 노사협의회 설치 및 설치준비위원회 모집 공고
6. 설치준비위원회 신청서\*별지서식

## 【붙임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사항

###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제3조 정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

###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영향 받지 않는다.

###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노사 동수로 3인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위원을 노조가 위촉함

### 제7조 의장과 간사

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노사 쌍방은 기록 등 사무 담당하는 간사 1명씩 둬

### 제20조 협의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인력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제21조 의결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제22조 보고사항**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 **제30조 벌칙**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붙임2】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구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근거 법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의	노동자와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집단적 협의기구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		
노사관계	상호협조	상호대립		
근로자 대표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		
근로자 지위	모든 근로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자		
시기	분기에 한번(필요시 수시)	2년에 한번(임금교섭은 1년에 한번)		
대상	주요 협의 사항	노동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 훈련, 고충처리, 건강증진,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복지증진, 여성노동자 보호, 임금의 지불방법	의무교섭	임금 및 노동시간
	주요 의결 사항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복지시설 설치와 관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임의교섭	노동조합 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보고 사항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경영계획 전반	금지교섭	강행법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위반,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대상
유사점	①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 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점 ② 집단적 노사관계 성격			

**【붙임3】**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주요 직종별 현황**

(2025. 7. 기준)

연번	직종	현원	소관부서
1	일반직	10명	경영지원팀
2	공무직	25명	경영지원팀
3	기간제 노동자	20명	경영지원팀

※ 최종 인원은 선거인명부 작성 시 조정될 수 있음

**【붙임4】**

**노사협의회 임무 및 이행사항 소관부서 현황**

구분	협의회 임무	소관부서
<b>협 의 사 항</b>	제20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해당직종 관리부서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해당직종 관리부서
	3. 근로자의 고충처리	해당직종 관리부서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해당직종 관리부서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해당직종 관리부서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해당직종 관리부서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해당직종 관리부서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해당직종 관리부서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해당직종 관리부서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해당직종 관리부서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해당없음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해당직종 관리부서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해당직종 관리부서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해당직종 관리부서 및 근로자 사용부서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해당직종 관리부서
	16.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해당직종 관리부서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해당직종 관리부서	

<b>의 결 사 항</b>	제21조(의결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해당직종 관리부서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해당직종 관리부서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해당없음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해당직종 관리부서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해당직종 관리부서 및 위원회 담당부서
<b>보 고 사 항</b>	제22조(의결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해당직종 관리부서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해당직종 관리부서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직종 관리부서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해당직종 관리부서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설치 및 설치준비위원회 모집 공고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설치준비위원회 노동자 준비위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

